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105

발의연월일: 2022. 8. 31.

발 의 자: 강민정 · 김남국 · 김의겸

김주영 • 민형배 • 박영순

서영석 • 양정숙 • 유정주

윤영덕 • 이수진 • 야진비

이용우 · 정필모 · 최강욱
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최근 도급·위탁·파견 등 간접고용이 확대되고, 다층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영향력·지배력을 가지는 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. 그럼에도 현행법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교섭 및 쟁의행위만으로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한편,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민·형사상 책임에서 면책됨. 그러나 그 범위가 협소하여 실제로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압류 신청으로 노동조합의 존속과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실정임. 이에 국제노동기구(ILO)는 2017년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.

그러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의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 편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 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력·영향력을 미치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교섭범위를 확대함(안 제2조제2호).
- 나.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폭력·파괴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노동조합이 아닌 임원·조합원등 근로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(안 제3조제 2항).
- 다. 사용자의 영업손실과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고, 손해배상 청구 및 압류·가압류 신청 한도를 노동조합의 존립이 가능한 범위까지로 한정함(안제3조제3항·제4항).
- 라. 근로자가 간접고용된 경우 근로자의 직접·간접 사용자는 근로자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(안 제3조제6항).
- 마.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력·파괴 행위 등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 정되는 경우, 배상의무자의 감면청구가 있었던 경우 법원이 손해배

상액의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함(안 제3조의2).

- 바.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사용자를 직접사용자와 간접사용자로 구분하고, 간접사용자의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을 명시함(안 제4조의 2).
- 사. 간접고용 근로자는 직접사용자와 간접사용자 중 일방을 선택하여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고, 그 신청을 받은 사용자는 그에 응하도록 함(안 제29조의6).
- 아. 간접사용자가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등을 이유로 직접사용자 와의 도급·위탁·파견 등 간접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 고, 이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직접사용자가 그 타당성을 노 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함(안 제4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 지).
- 자. 간접고용 근로자가 쟁의행위등을 이유로 한 간접사용자의 간접고 용 계약 해지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3 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).
- 차. 간접사용자가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등을 이유로 직접사용자 와의 간접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, 노동 조합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1조제1항제7호).

법률 제 호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 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(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·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본다.

4의2. "간접고용"이란 도급·위탁·용역·파견 등 그 명칭과 상관 없이 제3자를 매개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부분) 중 "爭議行爲로"를 "쟁의행위, 그 밖에 노동조합의 활동(이하"쟁의행위 등"이라 한다)으로"로, "請求할 수 없다"를 "청구하거나 그 재산을 압류·가압류할 수 없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임원·조합원,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재산을 압류·가 압류할 수 없다.
-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영업손실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④ 손해배상의 청구 및 가압류의 신청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재산을 압류·가압류할 수 없다.
- ⑤ 신원보증인은 「신원보증법」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, 쟁의행위,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.
- ⑥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간접고용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사용자와 간접사용자(이하 "공동사용자"라 한다)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 여부·시기 및 배상청구액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동사용자는 이중적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헌법이 정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⑦ 공동사용자는 제6항에 따른 협의를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인 노동조합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, 그 내용

을 협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장에 제3조의2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의2(손해배상액의 제한) ① 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폭력 또는 파괴 행위를 유발하거나 단체협약 또는 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폭력 또는 파괴 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인정할 만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.
 - ②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의무자(이하 "배상의무자"라 한다)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감면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.
 - 1. 쟁의행위등의 원인과 경위
 - 2. 사용자의 영업 규모,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
 - 3.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
 - 4. 배상의무자의 행위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
 - 5.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배상의무자ㆍ사용자의 노력 정도
 - 6. 공동사용자의 이중적 손해배상청구 여부 및 그 배상액. 다만, 공 동사용자 중 일방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협의 사항(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진술한 의견을 포함한다)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7. 그 밖에 손해액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제4조의2(간접고용의 특례) ①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간접고용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.
 - 1. 직접사용자: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 - 2. 간접사용자: 직접사용자와 간접고용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
 - ② 제1항에 따른 고용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근로 자를 사용하는 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사항에만 해당되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.
 - 1.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직·간접적 통제권이 있는지 여부
 - 2. 경제적 우위성을 이용하여 간접고용 계약의 체결, 대금의 결정, 갱신거부 및 해지 등을 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결 정할 수 있는지 여부
 - 3. 직·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지 여 부
 - 4.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사용자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수적·상 시적인지 여부
 - 5. 공정 간 유기적 연계성이 있어 근로자가 간접사용자의 사업에 실

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

6. 노동 제공의 결과로서 발생한 유·무형의 이익이 공유되는지 여 부

제2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9조의6(간접고용에서의 교섭 특례) ① 근로자 중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사용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사용자 간의 간접고용 계약에 따라 간접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(이하 "간접고용 근로자"라고 한다)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공동사용자중 직접사용자 또는 간접사용자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동사용자 중 일방은 3일 이내에 그 신청사실을 다른 공동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③ 공동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노동조합과 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.
-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 및 단체협약권에 관하여는 제29조제 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.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43조의2(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등 금지) ① 간접사용 자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등을 이유로 직접사용자와의 간접 고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직접사용자는 간접사용자가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등을 이

유로 간접고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부한 때에는 노동 위원회에 계약 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부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심 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-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.
- ④ 노동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인용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직접사용 자와 간접사용자 간의 종전의 계약이 끝난 때에 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.
- ⑤ 간접고용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부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「근로기준법」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있다.
- ⑥ 중앙노동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.
- ⑦ 중앙노동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간접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려야 하며,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.
- ⑧ 제5항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조사 및 구제명령 등에 관하여는 「근로기준법」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⑨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심사 및 제5항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

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81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소속 및 고용형태를 이유로 행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
- 7.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등을 이유로 간접사용자가 직접사용 자와의 간접고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행위 제8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8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제명령은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간접고용 계약의 회복 등 이에 준하는 간접고용 근로자 지위의 원상회복조치 명령을 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손해배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3조·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분부터 적용
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2條(定義) 이 法에서 사용하는	第2條(定義)
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.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使用者"라 함은 事業主, 사	2
업의 經營擔當者 또는 그 사	
업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	
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동	
하는 者를 말한다. <u><후단 신</u>	
<u>설></u>	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
	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(산업
	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
	포함한다) 및 노동조합 활동에
	<u>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・</u>
	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
	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 있어
	서 사용자로 본다.
3. • 4. (생 략)	3. •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4의2. "간접고용"이란 도급·</u>
	위탁ㆍ용역ㆍ파견 등 그 명칭
	과 상관 없이 제3자를 매개로
	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형태
	<u>를 말한다.</u>
5.・6. (생략)	5.・6. (현행과 같음)

用者는 이 法에 의한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로 인하여 損害 를 입은 경우에 勞動組合 또는 동조합의 활동(이하 "쟁의행위 勤勞者에 대하여 그 賠償을 請 求할 수 없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第3條(損害賠償 請求의 제한) 使 第3條(損害賠償 請求의 제한) ①

-----쟁의행위, 그 밖에 노 등"이라 한다)으로-----청구하거나 그 재산을 압류・가 압류할 수 없다. 다만,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 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임 원·조합원,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재산을 압류・가압류할 수 없다.
-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조 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사 용자의 영업손실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 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④ 손해배상의 청구 및 가압류

<신 설>

<신 설>

- 의 신청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 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재산을 압류·가압류할 수 없다.
- ⑤ 신원보증인은 「신원보증법」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, 쟁의행위,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.
- ⑥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제2조 제4호의2에 따른 간접고용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사용자와 간접사용자(이하 "공동사용자"라 한다)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여부・시기 및 배상청구액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이 경우 공동사용자는 이중적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헌법이 정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・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⑦ 공동사용자는 제6항에 따른

협의를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인 노동조합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, 그 내용을 협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3조의2(손해배상액의 제한) ① 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폭력 또는 파괴 행위를 유발하거나 단체협약 또는 교섭을 일 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폭력 또는 파괴 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수 있다.
 - ②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의무자(이하 "배상의무자"라 한다)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 배상액의 감면 청구가 있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 면할 수 있다.
 - 쟁의행위등의 원인과 경위
 사용자의 영업 규모, 시장의

- 3.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
- 4. 배상의무자의 행위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
- 5.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배상의무자·사용자의 노력 정도
- 6. 공동사용자의 이중적 손해배상 상청구 여부 및 그 배상액. 다만, 공동사용자 중 일방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협의사항(같은 조 제7항에 따라노동조합이 진술한 의견을 포함한다)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7. 그 밖에 손해액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사항
- 제4조의2(간접고용의 특례) ①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간접고용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.
 - 1. 직접사용자: 근로자와 직접

<신 설>

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
- 2. 간접사용자: 직접사용자와간접고용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
- ② 제1항에 따른 고용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가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사항에만 해당되더라 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.
- 1.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

 직·간접적 통제권이 있는지

 여부
- 2. 경제적 우위성을 이용하여 간접고용 계약의 체결, 대금 의 결정, 갱신거부 및 해지 등을 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
- 3. 직·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 는지 여부

- 4.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사용 자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 수적·상시적인지 여부
- 5. 공정 간 유기적 연계성이 있 어 근로자가 간접사용자의 사 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 고 볼 수 있는지 여부
- 6. 노동 제공의 결과로서 발생 한 유·무형의 이익이 공유되 는지 여부

제29조의6(간접고용에서의 교섭 특례) ① 근로자 중 제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사용자 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 사용자 간의 간접고용 계약에 따라 간접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(이하 "간접고용 근로자"라고 한다)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공동사용 자 중 직접사용자 또는 간접사 용자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교 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동사용자 중 일방은 3일 이 내에 그 신청사실을 다른 공동

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
- ③ 공동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노동조합과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.
-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 및 단체협약권에 관하여는 제2 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2 9조의2부터 제29조의5의 규정 을 준용한다.
- 제43조의2(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등 금지) ① 간 접사용자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등을 이유로 직접사용 자와의 간접고용 계약을 해지 하거나 계약갱신을 거부하여서 는 아니 된다.
 - ② 직접사용자는 간접사용자가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등 을 이유로 간접고용 계약을 해 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부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계약 해 지 또는 계약갱신 거부의 타당 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 -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

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. ④ 노동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인용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직접 사용자와 간접사용자 간의 종 전의 계약이 끝난 때에 그 계 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 약한 것으로 본다.

- ⑤ 간접고용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부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「근로기준법」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⑥ 중앙노동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.
- ⑦ 중앙노동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간 접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려야 하며,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

第81條(不當勞動行爲) ① 使用者 | 第81條(不當勞動行爲) ① ------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"不當勞動 行爲"라 한다)를 할 수 없다. 1. ~ 5. (생략) 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략)

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야 한다.

- ⑧ 제5항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조사 및 구제명령 등에 관하여는 「근로기준법」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.
- ⑨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심사 및 제5항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6. 소속 및 고용형태를 이유로 행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
- 7.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간접사용자가 직 접사용자와의 간접고용 계약 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 부하는 행위
- ② (현행과 같음)

第84條(救濟命令) ① 勞動委員會 는 第83條의 規定에 의한 審問 을 종료하고 不當勞動行爲가 成立한다고 判定한 때에는 使 用者에게 救濟命令을 발하여야 하며, 不當勞動行爲가 成立되지 아니한다고 判定한 때에는 그 救濟申請을 棄却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 ②·③ (생 략)